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하여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나, 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운전면허증의 통상적인 갱신수속을 하실 수 없는 · 하실 수 없었던 분에 대해, 아래와 같이 대응합니다.

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날 것 같은 분

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의 주소를 관할하는 각 운전면허시험장, 중앙·아쓰베쓰 우량운전자 갱신센터 및 각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어 신청을 하시면, 갱신기간 후에도 3개월 동안은 운전이 가능해집니다(※). 또한, 이 때에는 갱신수속 개시 신청서를, 또한 이미 이 신청을 하셨던 분 중에서 재차 신청을 하실 분은 갱신수속 계속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※이 기간 중에, 강습 수강과 적성검사 수험을 포함한 **통상적인 갱신수속을 다시 밟으셔야 할 필요**가 있습니다. 통상적인 갱신수속 장소는, 갱신연락서에 기재된 수속 장소입니다.

【대상자】

면허증의 갱신기간이 2020년 3월 13일 ~ 7월 31일까지인 분 및 이미 갱신기간 지정조치를 실시하여 조치 후의 갱신 가능 기간이 상기와 같은 분

【접수시간】

각 경찰서 평일 8시45분 ~ 17시

각 운전면허시험장 평일, 일요일 8시45분 ~ 17시

(하코다테, 아사히카와, 구시로, 오비히로, 기타미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, 일요일은 제1, 제3 일요일만)

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버린 분

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하여 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학과·기능시험을 치지 않고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,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